

지반침하 재난,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한다

-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... 사고예방부터 복구까지 관계기관 협력 강화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4월 1일 제정된 「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」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.
 - 이번 표준매뉴얼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('25.10.2)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,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립되었다.
- 본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,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되었다.
 -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 위기경보(관심-주의-경계-심각) 발령기준, 기관별 임무와 역할,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았다.
 - 아울러,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연계·운영 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정비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체계를 정비하고, 현장 대응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“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”면서,
 - “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지하안전팀	책임자	팀 장	조태영 (044-201-4424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이철환 (044-201-4425) 김민석 (044-201-4426)

지반침하 의심되면 **접근금지** 발견하면 **신속신고**

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



국토교통부



행정안전부

접근금지

지반침하 발생 또는 위험 지역은 **접근하지 않기**

지반침하 발생(의심) 지역



침하균열·공동 발생(의심) 지역에서
최소 10m 이상 떨어져 접근하기 않기

지반침하 위험 지역



굴착공사장, 배수구, 맨홀 등
위험지역 피하기

대피

즉시 **대피**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**체력을 아끼며 구조 기다리기**

운전 중 추락



시동을 끄고 경적과 비상등으로
구조 요청하고 기다리기

보행 중 추락



추락 지역 내 지반이 안전한 곳으로
이동하여 구조 기다리기

건물과 같이 추락



견고한 구조물 근처에서
머리를 보호하며 구조 기다리기

신고/구조요청

전화, 옥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**신고 및 구조 요청하기**

휴대전화 이용 가능



119 또는 안전신문고(안전신고)에
지반침하 발생 위치와 상황을 신고

휴대전화 이용 불가



옥성 또는 주변 사물을
이용하여 구조 요청하기